



제 1139 호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칙 제839호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

훈 령

- 훈령 제293호 남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8

공 고

- 공고 제2013- 1599호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처분공고 25
- 공고 제2013- 16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26
- 공고 제2013- 16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7
- 공고 제2013- 1630호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공시송달(소래샛길 소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36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
소 예정 공고 38
- 남동구보건소 공중위생업소 시설물무단멸실업소 직권말소 39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
소 예정 공고 40

고 시

- 고시 제2013- 115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매소홀로 하수암거 설치공
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41
- 고시 제2013- 116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44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1월 15일

남동구 규칙 제83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882	560	19	71	17	215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802	517	13	68	17	187
3급 소계	1	1				
행 정	1	1				
4급 소계	6	4	1	1		
행 정	4	3	1			
기 술	2	1		1		
5급 소계	59	28	2	8	2	19
행 정	36	19	2		1	14
의 무	4			4		
시 설	3	3				
행정 · 보건	2			1		1
행정 · 환경	2	1				1
행정 · 시설	2	2				
의무 · 간호	1			1		
행정 · 사서	1				1	
행정 · 녹지 · 시설	3	1				2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환경	2	1				1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1			1		
6급 소계	184	139	6	15	5	19
행 정	100	74	6		3	17
세 무	6	6				
전 산	1	1				
사회복지	6	6				
공 업	2	2				
녹 지	1	1				
보 건	3			3		
환 경	3	3				
시 설	15	15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방송통신		1	1				
행정 · 세무		3	3				
행정 · 사회복지		11	9				2
행정 · 사서		2				2	
행정 · 공업		2	2				
행정 · 농업		1	1				
행정 · 녹지		1	1				
행정 · 보건		2			2		
행정 · 환경		3	3				
행정 · 시설		4	4				
녹지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1			1		
보건 · 간호		5			5		
공업 · 시설		1	1				
공업 · 환경		1	1				
의료기술 · 간호		1			1		
행정 · 해양수산		1	1				
행정 · 공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환경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2			2		
행정 · 사회 · 시설		1	1				
7급 소계		264	173	3	22	5	61
행 정		121	72	3	1	3	42
세 무		25	25				
전 산		3	3				
사회복지		29	10				19
공 업		4	4				
농 업		1	1				
녹 지		6	6				
해양수산		1	1				
보 건		9			9		
의료기술		4			4		
간 호		5			5		
환 경		8	8				
시 설		34	34				
방송통신		2	2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행정 · 사회복지		2	2				
행정 · 사서		2				2	
공업 · 환경		1	1				
농업 · 수의		2	2				
보건 · 간호		3			3		
공업 · 시설		1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1				
8급 소계		240	151	1	17		71
행 정		123	72	1	1		49
세 무		10	10				
전 산		4	4				
사회복지		33	12				21
공 업		7	7				
농 업		2	2				
녹 지		5	5				
보 건		8	1		7		
의료기술		5			5		
간 호		3			3		
환 경		6	6				
시 설		23	23				
방송통신		3	3				
행정 · 사회복지		4	3				1
보건 · 간호		1			1		
공업 · 시설		1	1				
공업 · 환경		1	1				
행정 · 해양수산		1	1				
9급 소계		48	21		5	5	17
행 정		22	5			5	12
세 무		4	4				
전 산		1	1				
사회복지		5	1				4
녹 지		2	2				
보 건		5			5		
시 설		4	4				
행정 · 사회복지		5	4				1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소계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비서실장	1	1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기능직 계	76	39	6	3		28
6급 소계	9	6		1		2
전 기	1	1				
기 계	1	1				
운 전	4	1		1		2
사 무	3	3				
7급 소계	34	22	4			8
건 축	1	1				
전 화상담	1	1				
전 기	1	1				
기 계	2	2				
운 전	13	6	1			6
사 무	16	11	3			2
8급 소계	30	10	2	1		17
기 계	2	1	1			
운 전	11	1				10
사 무	16	8	1			7
간호조무	1			1		
9급 소계	3	1		1		1
운 전	3	1		1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13.12.12일자로 공무원 직종개편이 예정되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공무원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일부개정

- 기능직 : 조무직렬 16명을 사무직렬로 정원 조정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기관별 직급별	개 정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동
총 계	882	560	19	71	17	215	총 계	882	560	19	71	17	215
기능직 계	76	39	6	3		28	기능직 계	76	39	6	3		28
6급소계	9	6		1		2	6급소계	9	6		1		2
사 무	<u>2</u>	<u>2</u>					사 무	<u>3</u>	<u>3</u>				
조 무	<u>1</u>	<u>1</u>					조 무	<u>0</u>					
7급소계	34	22	4			8	7급소계	34	22	4			8
사 무	<u>10</u>	<u>6</u>	3			1	사 무	<u>16</u>	<u>11</u>	3			<u>2</u>
조 무	<u>6</u>	<u>5</u>				1	조 무	<u>0</u>					
8급소계	30	10	2	1		17	8급소계	30	10	2	1		17
사 무	<u>7</u>		1			6	사 무	<u>16</u>	<u>8</u>	1			<u>7</u>
조 무	<u>9</u>	<u>8</u>				1	조 무	<u>0</u>					
9급소계	3	1		1		1	9급소계	3	1		1		1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1월 15일

남동구 훈령 제2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각 실·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560	
기 획 예산실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7	행정7
		8급	5	행정4, 전산1
감 사 실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행정·사회·시설1
		7급	3	행정1, 시설1, 행정·사회·시설1
홍 보 미디어실	계		23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전산1, 방송통신1
		7급	6	행정1, 전산3, 방송통신2
		8급	7	행정1, 전산3, 방송통신3
	기능직	소계	4	
		7급	4	기계1, 사무2, 전화상담1
복 지 정책과	계		30	
	일반직	소계	30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7급	8	행정5,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12	행정4, 사회복지6, 행정·사회복지2
		9급	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희망복지 지 원 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6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7급	7	행정1, 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1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노 인 장애인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급	4	행정2, 사회복지2
		8급	5	행정2, 사회복지3
가 정 복지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5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급	5	행정4, 사회복지1
		8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9급	2	행정·사회복지2
평생교육 지 원 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6
		8급	4	행정2, 사회1, 보건1

문 화 체육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4	행정3, 시설1
		8급	6	행정6
사회경제 정 책 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전임다급1)
		7급	4	행정4
		8급	4	행정4
기 업 지원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공업1, 공업·환경1
		7급	4	행정4
		8급	5	행정3, 공업1, 시설·공업1
농수산 개발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1
		6급	3	행정·농업1, 행정·시설1, 행정·해양수산1
		7급	7	행정1, 시설2, 농업1, 해양수산1, 농업·수역2
		8급	3	행정·해양수산1, 농업2
녹 색 성장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공업·환경1
		6급	4	행정1, 공업1, 행정·공업1, 행정·공업·환경1
		7급	2	행정1, 환경1
		8급	4	공업3, 공업·환경1

청 소 과	계		18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행정·환경2
		7급	3	행정2, 환경1
		8급	7	행정4, 환경3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7급	1	사무1
환 경 보건과	계		19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환경1
		6급	5	행정1, 환경3, 행정·환경1
		7급	7	환경6, 공업·환경1
		8급	5	행정1, 환경3, 공업1
	기능직	소계	1	
		6급	1	사무1
건 설 과	계		28	
	일반직	소계	25	
		4급	1	기술1
		5급	1	시설1
		6급	6	행정1, 시설4, 공업·시설1
		7급	9	행정2, 공업1, 시설6
		8급	8	행정1, 시설5, 공업2
	기능직	소계	3	
		6급		
		7급	2	기계1, 운전1
		8급	1	사무1
건 축 과	계		22	

	일반직	소계	20	
		5급	1	시설1
		6급	4	행정1, 시설3
		7급	9	행정1, 시설7, 세무1
		8급	4	시설4
		9급	2	시설2
	기능직	소계	2	
		7급	1	건축1
		8급	1	사무1
도 시 관리과	계		21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1, 시설4
		7급	6	행정1, 시설5
		8급	6	행정1, 시설5
		9급	2	시설2
	기능직	소계	1	
		8급	1	사무1
도 시 경관과	계		16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3, 시설1, 행정·시설1
		7급	3	행정3
		8급	3	행정2, 시설1
	기능직	소계	4	
		7급	1	사무1
		8급	3	사무3
공 원 녹지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4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녹지·시설1

			7급	6	녹지6
			8급	6	행정1, 녹지5
			9급	2	녹지2
	교 통 행 정 과	계		17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시설3
			8급	4	행정4
			9급	1	전산1
		기능직	소계	2	
			7급	1	사무1
			8급	1	사무1
	자 동 차 관 리 과	계		23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행정·공업1, 행정·세무1
			7급	4	행정3, 세무1
			8급	8	행정8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2	
			6급	1	사무1
			7급	1	사무1
	총 무 과	계		30	
		정무직	-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4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7
			7급	6	행정6
			8급	8	행정8
		별정직	소계	3	
			5급	1	비서실장
			6급	1	비서요원(수행)

			7급	1	비서요원(기사)
		기능직	소계	2	
			7급	2	사무2
	재 무 과	계		29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공업·시설1
			7급	6	행정3, 공업2, 시설1
			8급	6	행정5, 시설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1	
			6급	3	사무1, 기계1, 운전1
			7급	6	사무1, 운전5
			8급	1	운전1
			9급	1	운전1
	세 무 과	계		49	
		일반직	소계	48	
			5급	1	행정1
			6급	9	행정1, 세무6, 행정·세무2
			7급	23	세무23
			8급	10	세무10
			9급	5	행정1, 세무4
		기능직	소계	1	
			7급	1	사무1
	민 원 봉사과	계		19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5	행정5
			8급	8	행정8
		기능직	소계	1	
			7급	1	사무1
	안 전	계		16	

관리과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시설1
		7급	6	행정2, 시설2, 공업1, 공업·시설1
		8급	1	시설1
	기능직	소계	4	
		6급	1	전기1
		7급	1	전기1
		8급	2	기계1, 사무1
토지 정보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시설1
		6급	4	행정1, 시설3
		7급	8	행정2, 시설6
		8급	7	행정1, 시설6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6항 관련)

구 분	직 종	계 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215	
구월1동	계		11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보건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3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2	
		7급	2	사무1, 운전1
		8급		
구월2동	계		13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3	행정3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8급	1	운전1
구월3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기능직	9급	1	행정1
		소계	1	
		8급	1	운전1
구월4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1, 사회복지2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2	
		7급	1	사무1
		8급	1	운전1
간석1동	계		11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기능직	소계	2	
		8급	2	사무1, 운전1
간석2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7급	1	운전1
간석3동	계		13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환경1
		6급	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8급	1	운전1
간석4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6	행정4, 사회복지2
		9급		
	기능직	소계	2	
		8급	2	사무1, 운전1
만수1동	계		12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7급	1	운전1
만수2동	계		11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9급		
	기능직	소계	2	
		6급	1	운전1
		8급	1	사무1
만수3동	계		10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기능직	소계	2	
		7급	1	운전1
		8급	1	사무1
만수4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8급	1	운전1
만수5동	계		11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2, 사회복지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7급	1	운전1
만수6동	계		11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6급	1	운전1
장 수 서창동	계		11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8급	2	사무1, 운전1
남촌 도림동	계		11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8급	1	운전1
논현1동	계		12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8급	1	운전1
논현2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2, 사회복지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7급	1	사무1
		9급	1	운전1
논 현 고잔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공업·환경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5	행정4, 사회복지1
		9급		
	기능직	소계	2	
		7급	1	운전1
		8급	1	사무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부서별 정원(조무⇒사무)을 재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능직 정원 주요 조정 현황 (별표 1, 5)

- 기능6급(조무⇒사무) : 환경보전과
- 기능7급(조무⇒사무) : 홍보미디어실,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민원봉사과, 논현2동
- 기능8급(조무⇒사무) :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안전관리과, 논현고잔동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599호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자에 대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11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처분의 제목 :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13. 11. 11 ~ 2013. 11. 27 (16일간)
3. 공고내용 : 소재지 불명인 대부업체를 2013. 11. 11 등록취소
4. 등록취소 업체 :

연번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 재 지	업체구분	비고
1	남동구2012-12 (대부중개업)	NMent대부중개	전**	인천 남동구 미래로23, 1318호(구월동,신한대부오피스텔)	개인	소재불명

5. 처분의 원인사실 :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2013.10.08 ~ 2013.11.08(31일간))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이의신청이 없고 소재확인이 되지 않음.
6. 처분의 법적근거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6호(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7. 행정처분 내용 : 대부업 등록취소
※ 처분의 효력 : 등록취소 처분일로부터 5년간 대부업 등록제한
8. 불복 절차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9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6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게임제공업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11. 13. - 2013. 12. 13. (30일간)

○ 행정처분 내역

상 호	영 업 소	대 표 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고
신화 게임랜드	소래역로 28, 115호 (논현동 678-1번지)	박*식 (64****-1)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1차 및 환전 1차 (2012. 12월 하순경 ~2013.1.15. 17:00경)	허가등록 취소	향후 1년간 동일업종 영업제한 (대표자,영업소) -법27조

○ 처분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할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거 영업장이 폐쇄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리오니
명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기관 및 문의처

- 처분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1008번지)
- 문 의 처 : 032)453-2143 (FAX 453-2139)

2013 년 11 월 13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6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일부 개정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기간만료 후 공개경쟁방법으로 적극 운영하여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보육체계 구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위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안 제10조제4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위탁방법 변경 (안 제12조)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위탁기간 만료 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변경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844, FAX 453-58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 이와 관련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기간만료 후 공개경쟁방법으로 적극 운영하여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보육체계 구축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안 제10조제4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위탁방법 변경 (안 제12조)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위탁 기간 만료 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변경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을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12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12. 2. 3. 공포, 2012. 2. 5. 시행) 별표 제8의2의 신설 이후에 위탁받은 운영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탁계약 등) ① ~ ③ (생략) ④ <u>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한다.</u> 제12조(위탁기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u>3년</u>으로 한다. <u>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u>	제10조(위탁계약 등) ① ~ ③ (현행과같음) ④ <u>〈삭 제〉</u> 제12조(위탁기간) _____ _____5년_____. <u>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u>

□ 참고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8.5] [법률 제11002호, 2011.8.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2-2023-8922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2012.2.3]

[별표 8의2] <신설 2012.2.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끝.

실·단·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630 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3. 11. 14 ~ 2013. 11. 29
4. 보상협의 통지서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 전 화 : (032) 453 - 2712
5.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내용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 나.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

소유자	주 소	등기번호	결과	사유	비고
이*숙	경기 김포 대곶 학의동로34번길 6*-2*	14442-0292-6413	반송	수취인불명	
이*자	동구 만석동 *4	14442-0292-6416	반송	주소불명	
이*보	동구 송림동 1*5	14442-0292-6418	반송	주소불명	
배*영	강원 횡성 강림 강림동3길 4*	14442-0292-6419	반송	폐문부재	
조**	서울 성북구 솔샘로25길 28, 117동 1*03호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14442-0292-6423	반송	폐문부재	
최**	중구 신도시남로 15, 101동 *03호 (운서동, 금호베스트빌1단지아파트)	14442-0292-6436	반송	폐문부재	
배**	경기 안양시동안구 관평로 68, 꿈마을한신아파트 71*동 705호	14442-0292-6432	반송	수취인불명	
배*수	서울 은평구 녹번로 34-*	14442-0292-6433	반송	폐문부재	
배*리	서울 은평구 녹번로 34-*	14442-0292-6434	반송	폐문부재	

6.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3 - 40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11. 22.
3. 처 분 근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11. 12 ~ 2013. 11. 21(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구월2 -213	청해생선구이	이영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33(구월동)	사업자등록폐업	2012.01.31	2013.11.22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11. 21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3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3 - 41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무단멸실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11. 29.
3. 처 분 근 거 법 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4. 공 고 기 간 : 2013. 11. 14 ~ 2013. 11. 27(14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비고
미용업	2010-118	령뷰티스킨	논현동 602-1	임영의	
“	2010-29	트윈스킨케어	남촌동 295-22	김현정	
“	2011-35	크리스탈에스테틱	구월동 1213-11	윤진주	
“	2009-65	미드림	간석동 292-3	문성란	
“	2007-17	수연헤어	간석동232-1	박명홍	
“	2010-139	오키드헤어	구월동 1312-6	이영진	
“	2011-45	핸드온핸드	논현동 632-1	이애경	
“	2010-14	머리나라	논현동 607-3	안담진	

6. 고 지 사 항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의하여 2013. 11. 27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별도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 (032)453-2632

2013년 1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3 - 42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11. 26.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11. 15. ~ 2013. 11. 25.(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만수5 -133	59쌀치킨 만수하이웨이점	강해영	구월로 354, 102호 (만수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3.08.31	2013.11.26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11. 25.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제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3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3 - 115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매소홀로 하수암거 설치공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매소홀로 하수암거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8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하수도
 - 명 칭 : 매소홀로 하수암거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하수도시설 : A=9,296.0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도시공사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제6항과 같음

□ 용 지 조 서

고시 일련 번호	동명	지번	지 목	공 부	편 입 면 적 (㎡)		잔 여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도로내	도로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구월동	823-2	천	506.0		53.0	453.0		인천광역시			방류부
2	구월동	823-1	천	360.0		281.0	79.0		인천광역시			방류부
3	구월동	828-4	천	112.0		112.0			인천광역시			방류부
4	구월동	811-6	천	6,624.0		260.0	6,364.0		인천광역시			방류부
5	구월동	811-5	제	5,118.0		118.0	5,000.0		인천광역시			방류부
6	구월동	827	전	593.0		322.0	271.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01-140 그랜드빌 비01호	김**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국민건강 보험공단	압류
7	구월동	827-5	도	1,249.0	159.0		1,090.0		인천광역시			도로중복
8	구월동	787-1	도	29,302.0	657.0		28,645.0		인천시 남동구			도로중복
9	구월동	827-8	전	477.0	198.0		279.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0	구월동	826-4	전	1,640.0	546.0		1,094.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1	구월동	833-3	전	611.0	92.0		519.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2	구월동	826-5	전	506.0	310.0		196.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3	구월동	826-26	전	148.0	4.0		144.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4	구월동	826-22	전	1,190.0	458.0		732.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5	구월동	826-28	구	190.0	75.0		115.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6	구월동	826-30	전	1,235.0	475.0		760.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7	구월동	793-9	답	768.0	289.0		479.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8	구월동	793-7	전	891.0	348.0		543.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19	구월동	794-3	전	1,515.0	635.0		880.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0	구월동	799-3	전	1,345.0	608.0		737.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1	구월동	1072-68	도	115.0	42.0		73.0		(국)건설부			도로중복
22	구월동	757-5	답	312.0	121.0		191.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3	구월동	757-3	답	394.0	41.0		353.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4	구월동	758-3	답	2,161.0	920.0		1,241.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5	구월동	759-3	답	909.0	279.0		630.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6	구월동	760-5	전	970.0	527.0		443.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7	구월동	761	전	327.0	108.0		219.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28	구월동	1072-70	도	359.0	86.0		273.0		(국)건설부			도로중복
29	구월동	762-1	전	585.0	116.0		469.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0	구월동	743-1	전	483.0	105.0		378.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1	구월동	744-4	구	297.0	96.0		201.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2	구월동	744-11	답	3,585.0	581.0		3,004.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3	구월동	744-9	구	195.0	32.0		163.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4	구월동	1081-6	구	274.0	38.0		236.0		(국)농림부			도로중복
35	구월동	717-2	도	27.0	3.0		24.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6	구월동	717-1	전	913.0	76.0		837.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7	구월동	717	도	83.0	15.0		68.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38	구월동	1068-19	도	133.0	7.0		126.0		(국)재무부			도로중복
39	구월동	701-1	전	1,310.0	97.0		1,213.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40	구월동	700-5	전	157.0	6.0		151.0		인천도시공사			도로중복
합 계				67,969.0	8,150.0	1,146.0	58,673.0					

□ 지장물 조서

번호		동 명	지 번	종 류	구조 및 규격	총 면 적 (㎡)	편입 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1	남동구 구월동	827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354.0	354.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그랜드빌 비01호	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3 - 11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6외 9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1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77-1	2013.11.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94-15	2013.11.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94-15	2013.11.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94-15	2013.11.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94-88	2013.11.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94-88	2013.11.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9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94-60	2013.11.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9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94-54	2013.11.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9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97-2	2013.11.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998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97-2	2013.11.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